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15 (2021. 6. 21 ~ 6. 25)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건설/부동산 중대재해	①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공사 중 인명사고가 났을 때 시공사는 물론 발주처와 설계, 감리 등 공사 참여자 전반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인사/노무	② **평등에 관한 법률안**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 고의성·보복성 등 악의적 차별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회 계류안	바이오/ 형사	③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 함.
공포 법령	기업	④ **가맹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년마다 실시하던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변경
입법/ 행정 예고	금융 및 구조조정	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가상자산 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금지 사항 추가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건설안전특별법안	■ 건설공사는 발주 · 설계 · 시공 ·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사 목적물(건축물, 도로, 철도 등)이 다양하며,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건설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8조). 나.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자는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안 제15조).	한국경제 21.06.15. 광주 붕괴사고에… 시행도 안된 중대재해법 고친다는 與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61517331	21.06.16. 제안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라.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함(안 제31조).

마.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34조 및 제35조).

바.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W1M0Y6K1G5F0J9F0S8H5E9W7F0O9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평등에 관한 법률안	■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야 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같이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이자 근본규범임. 「대한민국헌법」규정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차별을 금지 ·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우리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차별 예방과 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 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함(안 제2조).	한국경제 21.06.21. [단독] 대졸·박사 연봉 차이두면 불법?…기업들 '대혼란' 온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62112991	21.06.16. 제안

다. 이 법에서 차별이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 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 구별 · 제한 ·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4조제2항).

라. 제4조제2항의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발생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 구별 · 제한 · 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봄(안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마.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함. 다만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바.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7조).

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동법이 적용함(안 제8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 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도록 함(안 제9조).

자.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차. 각 영역인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 · 서비스 제공·이용 영역 등에서 규율되는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안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카.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에 관하여 법원이 임시조치 및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파.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 고려)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하.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분리 · 구별 · 제한 ·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37조).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N1K0H6R1C6N1S2P4G9X5J9R4V7F8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되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함. 이에 정보비대칭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 ·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제63조제1항 및 제87조의2제2항제3호 신설).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0M0P7V2E4R1W9R5C5M0H5R8H1F5	동아일보 21.06.18. 與 “수술실 CCTV 의무화”… 의협 “입법 보류, 논의기구 만들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18/107495759/1	20.07.24. 제안 20.11.17.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20.11.19. 소위 상정 20.11.26. 소위 상정 21.02.18. 소위 상정 21.04.28. 소위 상정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기관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산업통상자원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정기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맹사업은 유행에 민감한 산업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상황과 가맹사업 진출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정기조사가 3년마다 시행되어 가맹업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의 포화 및 과다경쟁으로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으로 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 ·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별도 파일 첨부		21.06.15. 공포 21.12.16. 시행

4. 입법/행정 예고 법안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정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제17299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의심거래 보고의무 관련 사항을 명확화(안 제7조) –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 보고이행과 관련하여 법제4조제1항 이외에 법제4조의2제2항도 포함하여 규정 나. 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안 제9조) – 금융회사등은 고위험 고객뿐만 아니라, 전체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 고객확인사항을 명확화(안 제10조의5) –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함 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안 제10조의20) –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말 것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거래를 하지 말 것 출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4252?opYn=Y&lsNm=%ED%8A%B9%EC%A0%95+%EA%B8%88%EC%9C%B5%EA%B1%B0%EB%9E%98%EC%A0%95%EB%B3%B4&isOgYn=Y&edYdFmt=2021.+6.+21.&stYdFmt=2020.+12.+1	파이낸셜뉴스 21.06.21. "거래소 내부거래 봉쇄가 능사 아냐… 수수료 현금화 허용해야" https://www.fnnews.com/news/202106211814485183	21.06.17. ~ 21.07.27.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경향신문][사설]안전도 책임경영도 없는 '노동 막장' 쿠팡(2021.06.20)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106202045015

주요내용 불이 나고 몇시간 지나지 않은 17일 오전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법인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 등 국내 직책을 다 내려놓음. 미국 법인의 최고경영자 겸 이사회 의장은 그대로. 사고가 수습되기도 전에 최고경영자가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며 사퇴를 발표한 것은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아니냐는 비판이 나옴. 노동단체들은 건물 내부 통로에까지 화물이 쌓여 있고 스프링클러도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평소에 꺼두는 등 위험 관리가 소홀했다고 주장함.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야함.

쿠팡은 외형적 성장은 거뒀지만, 위험한 기업이라는 인식도 커짐.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에 내몰렸고, 지난해에만 9명이 숨졌으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함. 노동자 안전은 뒷전인 채 '빨리빨리'만 외치는 속도 전쟁이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이어 대형화재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쿠팡은 답해야함.

[한겨레][사설]ESG경영, '생명 존중 일터'만드는 일부터(2021.06.18)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00009.html

주요내용 지난 2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청문회'에 나온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산재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따져보니 '안전하지 않은 작업자의 행동'탓이 컸다고 말함. 경영진이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 이 회사에선 1974년 창사 이래 지금까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한달에 한명꼴로 목숨을 잃음. 노동자의 과실이 있든 없든, 산재 사고는 기업의 부실한 안전 관리 탓이 크며, 그동안 산재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가벼웠던 것이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키웠음. 지금도 법원은 사망에 1억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판단하고 있음. 기업간 거래에서도 안전은 고려되지 않음. 중소기업 열에 여덟은 납품단가에 안전 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돼 있지 않아, '위험의 외주화'가 사고로 이어지는 고리.

ESG이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떠오르고 있으나,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되레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ESG 경영'의 진정성이 의심됨.

[서울신문][사설]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 제2의 광주 참사 막아야(2021.06.1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18031010&wlog_tag3=naver

주요내용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갖고 수습 방안을 논의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의 보안 문제도 협의함.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국회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보호'라는 본래의 취지가 후퇴했다는 우려가 컸음.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로 국한되어, 붕괴된 건물이 공중이용시설이 아니거나 버스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법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

이 법의 처벌 대상자인 '경영책임자' 규정이 불분명한 것도 문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바뀜. 법 적용의 예외 조항을 줄이고 관련 공무원에게도 감독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음. 경영계에서는 사업 의욕 저하 등을 이유로 처벌의 수위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 생명보호 차원에서 미흡함. 당정은 광주 참사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해 근본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함.

[한국경제][사설]광주참사 책임 규명도 전에 중대재해법 강화하겠다는 與(2021.06.1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61660071

주요내용 총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공사 사고는 안전시공 원칙 무시, 불법 재하도급, 감리 부실 등 건설현장의 총체적 난맥상이 빚어낸 인재란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 경찰은 광주광역시 및 동구청, 현대산업개발(시공사)를 압수수색했고, 국가수사본부장도 "철거업체 선정 과정의 비리 등 불법행위를 밝히겠다"고 강조함. 하지만, 재개발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미국으로 급히 출국한 사실을 경찰이 뒤늦게 확인했고, 문 전 회장은 경찰이 강제송환 추진 방침을 밝힐 만큼 사고원인 규명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금품수수 로비 의혹을 받고 있음. 이런 점에서 현대산업개발의 관리책임과는 별도로, 하청기업•재개발조합•브로커•조폭이 한데 얽힌 토착 건설비리에 적지 않은 사고 책임이 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음.

그런데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모든 책임이 원청 대기업에 있다는 듯, 중대재해처벌법을 건설 및 해체 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6월 국회에서 개정하겠다고함. 한술 더 떠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범위에 대표이사를 명확히 포함시키는 식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 경제계는 과잉금칙 원칙 위배, 모호한 안전의무 등 문제가 많고, 건설업처럼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한 경우 대표이사가 하청업체 안전관리까지 책임지기 어렵다고 누차 호소했지만 듣는 둥 마는 둥. 시행도 전에 법을 개정한다면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야하는데, 거꾸로 강화하겠다는 것. 참사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한 뒤 제도 보완을 논의하는게 순서임.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윤형석
변호사

T : 02-3016-8737
E : hsyoon@draju.com

건설/부동산팀



전재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

중대재해처벌법대응본부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

인사/노무팀



장성욱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724
E : sujang@draju.com



최선애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98
E : sachoi@draju.com

바이오팀



허수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67
E : sjhuh@draju.com

형사부문



김부식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81
E : bskim@draju.com



김진동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5
E : jdkim2@draju.com

기업부문



안호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4
E : hbahn@draju.com

금융 및 구조조정부문



김인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61
E : kij@draju.com